

# 2023년도 제1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8. 1.(화요일), 10:30
- 장 소: 화상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8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494건(안건번호 제2023-112319호~11581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12319호~112320호는 ■■■■ 블로그에서 음악 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드라마 후기, 개인일상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12321호~112323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12324호~112330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12331호~112361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12362호~112405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62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18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C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전송 중단이 될 경우 게시자로서는 기타 저작권 문제가 없는 개인의 표현 영역까지 전부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음.
- A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음악 저작물 전체 분량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문제가 있으며 저작권자가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음악은 3분 정도 인데 전체 분량이 맞는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드라마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음악 전체 분량임.
- 권현영 위원: 음악의 경우 1분 듣기는 합법 이용으로 보는 관행이 있음. 그리고 피해자 즉 저작권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경고가 아닌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12319호~112320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2319호~112320호는 드라마 후기, 개인일상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12321호~11232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게시물 중 안전번호 제2023-112322호~112323호는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 같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게시자가 작성한 창작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며 ★★★★★★ 등을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고 그 안에 링크를 표시한 것임.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보호원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12321호~11232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2321호~112323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12324호~11233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뮤지컬 공유 게시물은 게시자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전송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는 않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12324호~112330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2324호~11233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12331호~11236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12331호~11236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2331호~11236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1

2362호~112405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12362호~112405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12362호~11240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12406호~11581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일반영상, 출판/어문, 방송, 만화/웹툰, 영화, 게임,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더 퍼스트 슬램덩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12430호(‘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2023.01.04.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140포인트에 판매중임.

(‘플래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13603호(‘플래시’)는 2023.06.14. 개봉한 한국영화로 웹하드에서 350포인트에 판매중임.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제2023-113824호(‘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는 2023.06.06.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250포인트에 판매중임.

- 권헌영 부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3-112406호~11581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부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112406호~11581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112319호~112320호, 제2023-112321호~112323호, 제2023-112324호~112330호, 제2023-112331호~112361호, 제2023-112362호~112405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3-112406호~11581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

결함”

####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8. 8.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